

사천시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·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7. 18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7. 18(의안 제 32호)
- 라. 심사일자 :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2. 7.23)

2. 제안이유

-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위락·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조례안 제3조와 같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가.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음식점·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었으나, 개정하면서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,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시·군·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.(영 제17조제1항제2호).
- 나. 그동안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조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임.
- 다. 조례안 내용중 중요사항인 시설 설치가능지역은 3조 1호 “바”목인 농업용저수지외에는 사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·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와 같은 지역을 정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나, 틀리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.
- 라. 제3조의 “자연환경지역내”라는 용어는 “자연환경보전지역”이라는 용어와의 혼용으로

해석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“자연환경보전지역내”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, 기타 입법의 필요성, 상위 법령과의 상충은 없다고 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농업용저수지 항목에서 300미터로 한 이 유는?	다른 시군의 예를 참조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정하였음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8. 수정안

조 례 안	수 정 안
제3조(설치가능지역) <u>자연환경지역내</u> 위락·숙박시설..... 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.~마.(생략) 바. 유효저수량이경계로부터 <u>300</u> 미터 이내인 집수구역	제3조(설치가능지역) <u>자연환경보전지역내</u> 위락·숙박시설..... 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.~마.(생략) 바. 유효저수량이경계로부터 <u>200</u> 미터 이내인 집수구역